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일정기간”을 “30일의 범위에서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일정기간”을 각각 “기간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5항 중 “같다) 또는 지구별수협”을 “같다),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어촌계·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”을 각각 “어촌계·내수면어업계,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어촌계·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”를 “어촌계·내수면어업계,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”로, “어촌계·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”의”를 “어촌계·내수면어업계,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”의”로 한다.

제59조제1항을 제60 조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7조(양식업 면허의 취소) ① (생략)	제27조(양식업 면허의 취소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<u>일정기간</u> 을 정하여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30일의 범위에서 기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
③ 면허권자는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양식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		
2. 제2항에 따른 <u>일정기간</u>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	2. ----- <u>기간</u> ----- -----			
3. 제2항에 따른 <u>일정기간</u> 내에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	3. ----- <u>기간</u> ----- ----- -----			
제32조(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) ① ~ ④ (생략)	제32조(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		
⑤ 면허권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	⑤ ----- -----			

· 내수면어업계(「내수면어업법」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다수의 양식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권 행사자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5조(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)

① 어촌계·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그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의 행사를 하려는 자와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어촌계·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체

----- 같다), 지구
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-----

-----.

제35조(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)

① 어촌계·내수면어업계,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어촌계·내수면어업계,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-----

결한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④ <u>어촌계·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</u> 징수한 행사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<u>어촌계·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</u> 총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제59조(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) ① (생략)	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<u>어촌계·내수면어업계,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</u> --- ----- <u>어촌계·내수면어업계,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</u> ----- -----. 제59조(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) (현행 제1항과 같음)
--	--